당진 2차 휴먼빌 입주자 모집공고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의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 및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청약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당진군 도시건축과 - 50183호 (2008. 11. 1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357-20번지 외 52필지

▣ 대지면적 : 23,759㎡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지하3층, 지상 12 ~ 20 층 아파트 6개동 총 3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세대(3자녀특별공급 10세대 포함) 32세대 포함]

가. 공급대상

(단위 : ㎡)

구 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 택 형 (㎡)	공 급 세대수	층 수	세대별 계약면적					대 지 지 분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 계			
민영주택	22100-01	2008001009 (01)	111.5109	117	12~20층	84.7843	26.7266	111.5109	21.6450	133.1559	52.1281
	22100-02	2008001009 (02)	113.3440	119		84.6905	28.6535	113.3440	21.6211	134.9651	52.0704
	22100-03	2008001009 (03)	132.4325	80		99.3001	33.1324	132.4325	25.3509	157.7834	61.0528
	22100-04	2008001009 (04)	155.6991	80		118.4348	37.2643	155.6991	30.2359	185.9350	72.8175

나. 공급금액

(단위 : ㎡/천원 , VAT포함)

구 분				세대별 분양가격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주택형(㎡)	층별구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5%] 계약시	1차(10%) 08.12.20	2차(10%) 09.01.20	3차(10%) 09.03.20	4차(10%) 09.05.20	5차(10%) 09.07.20	6차(10%) 09.09.20	입주시(35%)
민영주택	111.5109	1층	7	64,858	139,142	204,000	10,200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71,400
		2층	7		144,142	209,000	10,450	20,900	20,900	20,900	20,900	20,900	20,900	73,150
		기준층	96		149,142	214,000	10,7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74,900
		최상층	7		164,142	229,000	11,450	22,900	22,900	22,900	22,900	22,900	22,900	80,150
	113.3440	1층	7	64,786	141,914	206,700	10,335	20,670	20,670	20,670	20,670	20,670	20,670	72,345
		2층	7		146,914	211,700	10,585	21,170	21,170	21,170	21,170	21,170	21,170	74,095
		기준층	98		151,914	216,700	10,835	21,670	21,670	21,670	21,670	21,670	21,670	75,845
		최상층	7		166,914	231,700	11,585	23,170	23,170	23,170	23,170	23,170	23,170	81,095
	132.4325	1층	4	75,962	174,238	250,200	12,510	25,020	25,020	25,020	25,020	25,020	25,020	87,570
		2층	4		179,338	255,300	12,765	25,530	25,530	25,530	25,530	25,530	25,530	89,355
		기준층	68		184,338	260,300	13,015	26,030	26,030	26,030	26,030	26,030	26,030	91,105
		최상층	4		202,338	278,300	13,915	27,830	27,830	27,830	27,830	27,830	27,830	97,405
	155.6991	1층	4	90,599	205,401	296,000	14,800	29,600	29,600	29,600	29,600	29,600	29,600	103,600
		2층	4		210,401	301,000	15,050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105,350
		기준층	68		215,401	306,000	15,300	30,600	30,600	30,600	30,600	30,600	30,600	107,100
		최상층	4		235,401	326,000	16,300	32,600	32,600	32,600	32,600	32,600	32,600	114,100

※ 청약시 유의사항

1.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 38조 2의 규정에 산정한 분양가 상한 총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2. 당 아파트는 2004년 4월 6일 사업계획승인신청 되어 2005년 12월 30일 사업승인된 단지로 사업계획승인사항이 현행 규정과 차이가 있음(환기설비, 소방설비 등)
3. 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 주택의 당첨자[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전원 포함) 및 세대원전원 포함]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은 5년간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3년간 재당첨제한이 적용됨.
4. 당 아파트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5.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6.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등 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있음.
7. 상기 층별 구분은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저층에서 최상층을 표기한 층수임. (층, 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8.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기준공정시점 이후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9.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10.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11.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12.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13.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금액 및 별도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확장과 별도품목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14. 중도금 대출 신청시(단, 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한함) 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회사가 전액부담 함. 단,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의 대출기간의 만료는 입주개시지정일 전일까지로 한다.
15. 중도금 무이자조건의 계약세대는 당사가 통보하는 일자에 대출신청 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시 필요한 제반서류 및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16.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 · 라인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 · 라인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17. 청약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음.
18.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각사 및 은행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08. 11. 14.)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단체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공급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규모 236세대의 10% 이내 22세대

주 택 형	111.5109	113.3440	계
공급세대	10	12	2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비율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11. 18. (10:00 ~ 15:00) 당사 견본주택
-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11. 18. (16:00) 당사 견본주택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대상자 구비서류 :
  ①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11. 14.)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④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⑤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용)
  ⑥ 인감도장
  ⑦ 특별공급 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접수장소에 비치)
  ⑧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에 한함.
  ⑨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에 한함.
  ※ 상기 제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만 접수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미달 또는 부적격 등 잔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특별공급에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우선선정함.
  [단,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과 85㎡이하 특별공급 대상이 모두 미달일 경우에는 동시 추첨함]

2) 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08. 11. 14.)현재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만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재당첨 금지 적용자 제외)
  – 청약(예)부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는 본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불가함.
  – 자녀 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됨)
- 총 공급세대의 3% 이하인 10세대 (전 주택형)

주 택 형	111.5109	113.3440	132.4325	155.6991	계
공급세대	3	3	3	1	1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비율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11. 18. (10:00 ~ 15:00) 당사 견본주택
-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11. 18. (16:00) 당사 견본주택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청약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미달 또는 부적격 등 잔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3자녀 특별공급신청자는 일반공급으로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3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함.(일반공급 당첨 무효처리)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우선순위 배점표 상의 차순위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
  ① 특별공급 신청서 및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②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08. 11. 14.)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④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분.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자.
  ⑥ 무주택 서약서(접수 장소에 비치)
  ⑦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⑧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용도:주택공급신청용)
  ⑨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본)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 선정방법 : 아래 배점표에 의함
- 아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한 확인한 결과 평저요소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의 상이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6항)

평 점 요 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 준	배점기준: 점수	비 고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비 고		(1),(2) :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건교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3) 청약가점제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2조의 1에 의거 일반공급 세대수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에 75%, 85㎡ 초과에 50%를 우선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가점제의 공급기준

구분	면적구분	공급기준
청약가점제	전용면적 85㎡ 이하	•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가점점수(산정기준표 참고)가 높은 순으로 75%를 우선공급함. [나머지 25%는 추첨제를 적용함]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점수(산정기준표 참고)가 높은 순으로 50%를 우선 공급함 [당 공급물량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이나 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에 의거 채권매입상한액을 산정한 결과 상한액이 '0' 원으로 일반 공급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제 방법으로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추첨제(일반공급)를 적용함]
	공 통 사 항	• 각 주택형별로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순위를 취득한 자. • 가점제 신청분 중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의 적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 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1조의 2 또는 제 12조에 따라 60㎡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 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에 따르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 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택 기간을 가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 을 산정한다.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록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 저축 가입자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에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한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일 반 기 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아래의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 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한다.

▣ 가점 산정기준표

가 점 표 (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V표기)

가 점 항 목	가점상한	가 점 구 분	점 수	해당사항	가 점 구 분	점 수	해당사항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② 부양가족수	35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총 점	84점 만점 기준						
비 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1조의 2 제 3항, 제 12조 제 3항, 제 5항, 제 7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한다.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 (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 감점 산정기준

구 분	감점항목: 기 준	감점항목: 소유주택수	감점점수
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 3항 제 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1조의 2 제 1항 제 2호 또는 제 12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제 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4)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08. 11. 14.) 현재 당진군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 후 청약이 가능함.
- 1순위 주택당첨자 중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중복청약시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하며,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당진군 주택건설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당진군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당진군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으로 변경해야 청약 가능함.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거주 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청 약 관 련 예 금	접수 일자	청약접수 장소 / 시간	추첨 및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당진군 (3자녀 무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충청남도 거주가능)	특 별 공 급		• 위 특별공급 또는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2008 11. 18. (화)	당사 견본주택 (10:00~15:00)	당사 견본주택 2008. 11. 18 (화)
		1순위	공 통	– 가점제 대상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분 – 추첨제 대상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분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008 11. 19. (수)	■ 접수장소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청약신청안내참조 ■ 접수시간 *08:30~18:00	*일시 : 2008. 11. 27 (목)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8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85㎡~105㎡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85㎡~105㎡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80. 8. 29 이전 국민은행(구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 5. 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예치금액 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전용면적 85㎡ 초과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불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한 분중 세대주가 아닌 분 (2002. 9. 5 가입자 포함)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2순위	공 통	– 가점제 대상자: 2순위 청약자 전원 – 추첨제 대상자 : 해당사항 없음 (별도 추첨제 신청자격 없음)	2008 11. 20. (목)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 금액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			
		3순위	전 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분	2008 11. 21. (금)	■ 접수장소 : 우리은행 본,지점 ■ 접수시간 : 09:30~16:30	

▣ 청약시 유의사항

①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②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창구 청약 가능시간 – 09:30 ~ 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3순위는 우리은행 본,지점에서만 신청가능]

③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판단 기준등의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청약가점제 안내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경과기간 및 요건

1.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함.
2. 면적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일, 기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 없이 예치금액 상호간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3. 면적변경한 자의 주택공급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 후 면적만 신청 가능.
     (단, 면적변경이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면적만 청약이 가능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4. 1994.8.15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접수 방법

- 공통사항 : 순위별로 접수일정을 구분하여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 1, 2순위
  – 1순위자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 1순위자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 [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 시 입력한 주택소유 현황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됨.
-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층별, 동별, 호별, 향별, 라인별, 군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일정을 구분하여 청약하되,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차 순위를 접수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인터넷 · 모바일 청약신청 안내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 용 대 상	공 통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에 해당되는 분.	
	인터넷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 청약센터 → 주택청약신청 (www.apt2you.com)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 (특별공급 및 영업점 창구청약시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는 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제1, 2 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제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청약 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배우자 관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증 사본1부(또는 주민등록 등 · 초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배우자 분리 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자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

※ 특별공급 당첨자 중 전산검색을 통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분양가 상한제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어 재당첨 제한기간 이내에 있는 자는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지급 없이 환불되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는 해당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을 통하여도 청약신청이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주 택 형	청약 신청금	신 청 금 납 부 방 법
전 주택형	일백만원	우리은행 본/지점에 청약신청금 예치시 신청가능 (창구 청약시 가능한한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당진군 소재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 불 기 간	환 불 장 소	구 비 서 류	신 청 금 납 부 방 법
당첨자 발표 후 익영업일 이후 평일 : 09:30~16:30 단,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우리은행 본, 지점 (단, 청약자 본인 은행 계좌로 이체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됨)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시 사용한 도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제 3 자 대리 환불시	• 상기 서류 외 청약자 인감증명서(용도: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1부 •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우리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호수 결정방법
특 별 공 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 · 호수를 결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일 반 공 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제2종 채권매입예정액이 같아 경쟁이 발생한 경우 남은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이용기간	• 2008. 11. 27 ~ 2008. 12. 6 (10일간)	
ARS	전화번호	•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서비스번호 : 701) / 1369번 +서비스코드 5번+#	
	이용기간	• 2008. 11. 27 ~ 2008. 12. 6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 제공일시 : 2008. 11. 27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당첨자 명단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의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 바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 일시
  – 정당 당첨자 : 2008년 12월 3일 ~ 2008년 12월 5일 [3일간] 09:30~16:30
- 계약체결 장소 : "당진 2차 휴먼빌" 견본주택 (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 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 계좌 : 아래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후 무통장입금증 원본 제시)하거나 계약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구분	납 부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전 주택형	우리은행	1005-401-067218	삼보인더스트리(주)외 1인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계약체결시 구비 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당진군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여부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 · 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배우자 직계존속의 호적등본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주택소유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서류외에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 인감도장 및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조건 등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 불가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1 · 2 · 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자 또는 기당첨된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통장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예비당첨자 중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단지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시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은 지정된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수함.
- 하자 보수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 요청을 통보 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1.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에 한함) 전원.
2.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4.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5.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6.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7.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검사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다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 1호 가목 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 주택(이하 "소형, 저가주택"이라 한다)소유에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 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함.(장기간 보유 특례)
   – (현재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 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 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현재,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에 따르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문고, 보육시설,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 입주자 사전점검

-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배, 조경, 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당사는 입주개시 약 1~2개월전에 입주자 여러분이 직접 하자여부를 사전점검 하시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교육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여부 확인
  ※ 사전점검에대한 자세한 안내문은 사전점검일 이전에 별도 통보 예정임.

▣ 입주 예정일 : 2009. 11월경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대출 안내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분양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을 시행할 예정임.
– 단,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 사정에 의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분은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체 일시에 대하여 별도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대출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유의사항(필수확인사항)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여 취소가능)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변경 전보다 작은 주택형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당진군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면적이상의 변동시 상호 정산함.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 주택 공급 질서를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주자로 선정(3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동안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 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최상층세대의 경우, 다락방계단설치로 인해 다음과 같이 일부품목이 설치되지 않음
  (111㎡ : 안방화장대, 침실2 옷장, 113㎡ : 안방문 위치변경, 132㎡ : 기본형-화장대)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가,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별도계약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되며, 별도계약(설치사항, 규격), 전시품 및 공간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 공간 등)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세대모형의 가구소품,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또는〈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택공급신청서상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입주자에 대한 융자는 계약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대출신청자 본인 부담이며, 금융거래신용불량자(신용관리자)등 계약자 본인의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한 분은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함.
- 주택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배, 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한 입주자 사전점검 방법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에 따름.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내부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와 인테리어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운영방식 결정, 운영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입주 후 구성되는 자치위원회에 일임 함.
- 각종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커뮤니티시설 면적 및 조경면적은 사업계획승인기준이며 좀 더 쾌적한 단지조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시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램프 및 환기설비 등으로 인하여 조망권 제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시공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 시 관리사무소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함.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새시,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홍보 카탈로그에 표기된 각종 관내시설(학교,관청,도로,철도,공원,상하수도,기타,혐오시설 포함)은 허가관청 및 국가 시책에 따라 신설,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음
- 발코니는 세대전용이 아닌 비난방 공간인 외부공간으로 단열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승인 도서에 의거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음. 발코니 샷시 설치시 환기 부족으로 인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후 주방가구, 일반가구 규격 및 배치불만, 전자제품 사용불편 등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 평면 및 가구류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등을 입주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할 수 없으며, 내부시설물의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분양전, 후 분양가 상승사유 및 하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 할 수 없으며, 각 동 및 호수별 분양가 차이에 대하여 차이점 (소음, 일조권, 조망권, 기타 혐오시설, 사생활 침해, 환경권 등)을 감안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분양보증약관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보 증 서 번 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62,877,100,000 원	제 01212008-101-0006700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 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함.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회 사 명	주 소	주택건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체	삼보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192-1 4층	서울 – 주택2004 – 0087
시 공 사	일신건영 주식회사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40-2	경기 – 주택1990 – 0007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 사 명	감 리 금 액	비 고
건축공사감리	신성종합건축사 사무소주식회사	1,036,838,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전기 · 소방 · 통신공사감리		165,000,000원	

※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면적 (1층~기준층)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	확장구분	확장 공급금액(VAT포함)	확 장 내 역
111.5109	전체확장	6,521,000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 부부욕실
113.3440	전체확장	7,618,000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
132.4325	전체확장	8,447,000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
155.6991	전체확장	10,606,000	침실1(안방), 침실2, 침실4, 거실, 주방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가격은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비용이 제외된 금액으로 발코니 확장시 가구 및 인테리어는 추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견본주택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4.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할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추가되어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제시한 천정고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음.
5. 상기 금액은 아파트 분양가와 별개이고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별도 안내하여 계약체결 할 예정이며, 발코니확장을 실별, 위치별로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할 수 없음.
6. 상기 금액은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람.

▣ 제 2종 국민주택채권안내

- 당해 주택은 주택법시행령 제95조 4항에 따른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하"채권"이라 함) 매입대상 주택임.
- 공급금액과 채권매입상한액은 별개이며, 본 주택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시행지침에 의거 산정한 결과 채권매입상한액이 0원임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거 기본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용품,평면계획, 발코니확장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비고
1	가구	신발장, 현관장, 화장대, 받침장, 세면대하부장, 욕실장(공용,부부)	
	주방가구 및 기구	주방가구(상판포함), 냉장고장, 렌지후드, 가스오븐렌지, 주방벽타일	
2	조명기구	조명기구(매입등 제외)	
3	바닥재	강화마루, 걸레받이, 폴리싱타일(현관), 천연대리석 디딤판	
	벽, 천정마감	벽지, 천정지, 우물천정, 아트월	
4	욕실마감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수전류, 엑세사리 등)	

- 마이너스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 신청은 해당주택형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마이너스 옵션을 원하시는 청약자는 청약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람.
  – 기본형 계약일 이후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거나 선택한 품목을 변경할 경우 2008년 12월 12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는 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 함.
  – 마이너스옵션 신청시 품목별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없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서 안내 드릴 예정임.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2호에서 정한 금액인 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 또는 사업주체가 시공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을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께서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주 택 형	금 액	비 고
1	111.5109	19,837,800	기본형건축비(지상층)의 15%
2	113.3440	20,163,900	기본형건축비(지상층)의 15%
3	132.4325	26,065,600	마이너스 옵션 원가보고서 기준
4	155.6991	30,176,300	마이너스 옵션 원가보고서 기준
합 계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 등록세 등이 미포함 되어 있음.

※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설치하려는 자는 일반 당첨자 발표일 이후 3일이내, 당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약서를 받고 신청하여야 함.

▣ 택지감정평가 회사 및 평가금액 (상가제외 금액임)

회 사 명	평가금액 (원)	비 고
1. 한국감정원	1,210,000 / ㎡	
2. (주)가온감정평가법인	1,180,000 / ㎡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수청리 883번지 일원 (☎ 041-358-2323)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당사 분양사무실 및 본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 먼 빌

총 396세대 | 111㎡(구 33평형) | 113㎡(구 34평형) | 132㎡(구 40평형) | 155㎡(구 47평형) |

※ 지번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357-20 외 52필지 ※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대지면적 : 23,759.00㎡ ※ 연면적 : 59,946.5053㎡

※ 건축규모 : 지하 3층, 지상 12~20층 6개동 및 부대 복리시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상기 발전계획은 추후 해당관청이나 부서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권 100%확보 ※ 사업승인번호 : 당진군 도시건축과 -2005-2(변경 승인 3차)

문의 : 041)358-2323

시행 Sambo 삼보인더스트리주식회사

시공 일신건영